

스페셜올림픽코리아 종목별위원회 운영규정

2020.06.24.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근거 및 명칭) ① 이 규정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종목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② 위원회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○○○ 위원회라 하고,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2 조(목적) 위원회는 본회에 소속된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고 각종 대회的高效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소재지) 본 위원회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.

제 4 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종목별 선수 선발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
2. 발달장애인 선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
3. 발달장애인 종목별 경기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4. 발달장애인 종목별 경기의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
5. 발달장애인 종목별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6. 발달장애인 종목별 경기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7. 발달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체육 유관단체와의 교류
9.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


10.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조직) ① 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종목별위원회로 승인을 요청하면 본회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 단체로 승인 받을 수 있다.

② 설립 가능한 종목은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(SOI) 및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(VIRTUS)의 정식종목으로 하되, 그 외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설립이 가능하다.

제6조(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) ①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②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.

가. 위원회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나. 위원회의 임원의 선임 및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위원회는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위원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라. 위원회는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하며,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임 원

제7조(임원) ① 위원회의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위원회의 임원의 수는 해당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8조(임원의 선임) ① 임원의 선임, 보선 및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처장은 이사에 포함된다.

- 제9조(각종 소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각종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,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- ③ 각종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장 자산 및 회계

제10조(자산의 구분) 위원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유동산 및 부동산
2. 기금
3. 회비
4. 본회 지원금
5.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
6. 사업 수익금
7. 기부금 및 찬조금
8. 기타 수입금

제11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,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기금 및 적립금)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로 한다.

제13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4조(회계감사)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.

제5장 사 무 처

제15조(사무처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, 직원의 임면은 인사 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되,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직제 및 규정) ① 사무처의 기구, 조직,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,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.

부 칙 (2020. 06. 24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